대한갑상선학회 임상연구상

2018년 07월 04일 이사회 인준
2018년 08월 24일 이사회 인준
2019년 01월 16일 이사회 인준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갑상선학회(이하 학회)가, 우리나라 갑상선질환 환자의 임상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현황에 의거한 임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대한갑상선학회 임상연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갑상선학회 임상연구상"이라고 칭한다.

제 3조(수상자 선정)
매년 1~2개의 과제를 선정, 그 과제의 책임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제 4조(연구 주제)
1. 자유 주제로 하되, 갑상선질환 환자의 임상 진료에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 주제에 한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성 세부 주제를 공모할 수 있다.
2. 과제 형태가 지정 공모된 경우에는, 이에 한한다.
3. 다기관 협동연구는 연구과제로 선정되면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전체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원 기관 중 최소 3개 이상의 기관을 협동연구자로 선정하여 과제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4. 과제의 성격상 IRB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 5조(수상자 자격)
1. 대한갑상선학회 평생회원으로 한다.
2. 당해 연도 최초 공고 시 제시된 학술상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에 SCI/SCIE 등재학술지(국내 SCI/SCIE 포함)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원저 또는 종설 논문(증례 제외)을 1편 이상, 3년 이내에 대한갑상선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Thyroidology, 이하 IJT)에 주저자로 원저 또는 종설을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 예정인 자에 한한다. 과거 본 학회의 타 학술상 수혜자인 경우, 타 학술상 수상 시 제출하였던 논문은 심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한 연구자가 한 해에 두 가지 이상의 상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과거 본 학회의 타 학술상 수혜자인 경우, 수혜자의 의무를 완수한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제 6조(구비 서류)

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정하는 날까지 학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이력서 1통
(3) 사진(명함판) 1매
(4) 연구계획서(소정양식) - 파일 이메일 제출
(5) 연구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최근 3년간의 논문목록을 IJT 게재 논문, SCI/SCIE 게재 논문, 기타 논문으로 분류하여 제출)

제 7조(심사)

1. 연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2. 연구계획서 평가를 60%로 하고, 기존의 논문에 대한 평가를 30%로 하며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은 연구상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1) 대한갑상선학회의 임원, 부총무, 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횟수 (2) 최근 3년간 대한갑상선학회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로 구연 및 포스터를 발표한 횟수 (3) 최근 3년간 IJT에 주저자로 발표한 원저 또는 종설 논문 편수 (4) 최근 3년간 IJT의 논문을 SCI/ SCIE 논문에 인용한 횟수 등에 따라 부여한다. 가산점은 연구자상 지원 시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검토하며, 신청 시 누락된 자료는 검토하지 아니한다.
3. 연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 후보를 이사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제 8조(지급)

1. 연구상은 학술대회 총회석상에서 지급한다.
2. 상금은 건당 1,000만원 이내로 한다. 단, 과제의 규모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증액될 수 있다.

제 9조(수상자의 의무)

1. 수상자는 3년 이내에 SCI/SCIE 저널 또는 IJT에 반드시 본 연구상의 수상과 관련하여 학술상 수상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원저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대한갑상선학회 임상연구상(수상연도)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임(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Thyroid Association Clinical Research Award OOOO(수상연도)" 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상자는 수상 과제에 대하여 연구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3. 본 상의 수상자는 추후 학회에서 수여하는 모든 상에 지원 시 지원서에 이 상의

수상 여부와 수상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수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상의 수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적절치 못한 경우 상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제 10조(부칙)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위원회의 결의나 일반관행에 따른다.
3. 제5조(수상자 자격)의 2항은 본 상의 신설 시기를 고려하여 2020년부터 적용한다.